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537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 박수영・이헌승・김정재

서일준 • 박성민 • 박준태

이종욱 • 구자근 • 박수민

백종헌 • 박성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제조산업은 한 국가 내에서 모든 부품의 생산·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부품생산·조달체계를 갖춘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밸류 체인사업으로 관세부과는 원가상승으로 직결되는 구조임. 이에 미국·EU·일본·대만 등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 협정을통해 항공기 부분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국제 협정이 아닌 자국법 개정을 통해 관세를 감면해왔으며, 주요국과의 FTA 체결·확대로 인해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2013년부터 일몰조항으로 변경하였고,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관세감면율 조정을 거쳐 2029년 이후영구 폐지될 예정이지만, 실제 FTA을 통하여 관세를 실제로 면제받는 비율은 해외 부품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항공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겨우 23%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가 대안 없이 폐지된다면 항공 정비비 지출이 늘어 항공운송업계의 원가상승 요인이 되고, 부과된 관세는 이용객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음.

예컨대, 각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LCC 항공사들은 수익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내선을 줄이고 국제선 운항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 어 지역민 교통 편익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올해 출범한 우주항공청이 추진 중인 항공부품 세계 생산기지화를 위한 소부장 사업, 정부의 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향후 차질을 빚거나 항공우주산업의 제조·정비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도 농후함.

이와 같은 우려로 우리나라도 '항공기 부분품의 교역 자유화를 위한 국제협정(WTO TCA,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 가입을 전향적 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에 약 2년, W TO 가입 절차를 최종 비준까지 약 2~3년 이상 진행해야 하므로 최 소 4~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이에 국제협정 가입 시까지 항공비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2029년까지 현행대로 면제하여 세계 주요 선진국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6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6항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햀 개 정 아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 ⑤ (현행과 같음) ① ~ ⑤ (생 략)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 <u>(6)</u> -----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 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 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 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 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 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 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 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2022년 2025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u>1월</u> 1일 1월 1일 1월 1 1월 1 1월 1 1월 1 부터 일부터 일부터 일부터 일부터 2029년 2024년 12월 31 12월 31 12월 31 12월 31 12월 31 <u>일까지</u> <u>일까지</u> <u>일까지</u> <u>일까지</u> 일까지 일까지 100분 100분 | 100분 | 100분 | 100분 100분의 100 의 100 의 80 의 60 의 40 의 20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